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조금의 지급 신청 기한 확대〉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85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임. 특히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가 있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을 늘려야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제2항1)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전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u>

- 1)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현행법 제25조제2항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
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구조금의 지급 신청 기한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할지, 그에 대
한 예외를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²⁾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
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³⁾
-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
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에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견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과 같이 구조금 지급 신청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시
기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기한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음.

2) 「대한민국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결정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구조금 지급 신청 기한은 신청권에 대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피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 기한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제척기간의 주된 취지인 법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범죄피해자의 구조금 지급 신청권이 소멸하는데, 개정안은 소멸된 구조금 지급 신청권을 다시 인정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려는 것임.

- 구조금 제도의 입법목적이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라고 할 때,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는바 법적 안정성과 권리구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증거의 발견”이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아무 제한 없이 해당 증거의 발견만으로 이미 소멸된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

부담의 급증 등의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73